KOSHA GUIDE

P - 107 - 2020

#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권혁면
- O 개정자:
  - 조필래
 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임지표
  - 안전보건공단 권현길, 임지표, 강민수
  -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, 최우진, 김종우

### O 제·개정 경과

- 1998년 7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8년 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4년 10월 KOSHA Code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4년 12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5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6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0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# O 관련 규격 및 자료

- 미국 환경보호청(EPA), "Risk Management Programs(RMP)"
- 미국 환경보호청(EPA), "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(AEGL)"
- 미국 에너지부(DOE), "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(TEEL)"
- KOSHA GUIDE P-92-2012, "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"
- KOSHA GUIDE P-110-2012, "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수립에 관한 기술지침"
- API RP 581, "Risk-Based Inspection Technology)", 2008
-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-2호 "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"

####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0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적용범위

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, 인화성 가스, 독성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의 누출·화재·폭발에 의한 가상사고 선정 시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끝점"이라 함은 본 지침에서 주어진 끝점농도, 과압 또는 복사열 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.
  - (나) "냉동액체 (Refrigerated liquid)"라 함은 상온·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.
  - (다) "최악의 사고 시나리오"라 함은 누출·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끝점의 거리가 가장 먼 가상 사고를 말한다.
  - (라) "대안의 사고 시나리오"라 함은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이외에 사업장에서 현실 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시나리오 중 영향범위가 최대인 시나리오를 말한다.

- (마) "최대량"이라 함은 개별 단위설비 또는 배관 등에서 저장 혹은 처리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말한다.
- (사) "단위설비"라 함은 탑류, 반응기, 드럼류, 열교환기, 탱크류,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, 압축기,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.
- (아) "물반응성 물질"이라 함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- (2) 이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, 영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사고피해 결과분석 변수의 결정방법

- 4.1 사고 시나리오 선정
  - (1) 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.
  - (2) 사고 시나리오 구간은 해당 단위설비의 인입측 플랜지에서부터 연결 단위설비의 인입측 플랜지가지로 한다. 다만 연결배관에 펌프, 자동차단밸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분까지를 시나리오 구간으로 구획할 수 있다.
  - (3)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5.1항을 대안의 사니리오는 6.2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#### 4.2 끝점

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끝점을 결정하여야 한다.

4.2.1 독성물질인 경우

농도가 <붙임 1>에서 규정한 끝점농도(mg/ℓ 또는 ppm)에 도달하는 지점 4.2.2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인 경우 (가연성 물질 포함)

- (1) 폭발인 경우
  - 0.07 kg<sub>f</sub>/cm²의 과압이 걸리는 지점
- (2) 화재인 경우

40초 동안 5 kW/m²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지점

(3) 누출인 경우

누출된 물질의 폭발하한농도의 100%인 지점

#### 4.3 풍속 및 대기안정도

- (1)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지상 10 m 높이에서 초당 1.5 m의 풍속으로 하고 대기안정도는 F등급을 사용한다.
- (2)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풍속은 과거 1년 이상 그 지역의 평균 기상조건 및 대기안정도(<붙임 2> 참조)를 사용한다. 단, 확인불가 시 풍속은 지상 10 m 높이에서 초당 3 m로 하고, 대기안정도는 D등급으로 사용한다.

## 4.4 대기온도 및 습도

- (1)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대기온도는 40℃, 습도는 50%를 사용한다.
- (2)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과거 1년 이상의 그 지역의 평균 온도 및 평균 습도를 사용한다. 단, 확인불가 시 25℃, 50%로 한다.

#### 4.5 누출원의 높이

- (1)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.
- (2)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에는 실제 누출되는 높이를 사용한다.

#### 4.6 지표면의 굴곡상태

- (1) 지표면의 상태는 도시와 시골 지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한다.
- (2) 도시지형은 건물과 나무 등이 많은 지형을, 시골지형은 평탄한 지형을 의미한다.

#### 4.7 누출물질의 온도

- 4.7.1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
  - (1) 냉동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온도를 사용한다.
  - (2) 냉동액체 이외의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사용한다.
- 4.7.2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인 경우 운전온도를 사용한다.

# 5.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

5.1 사고 시나리오 분석대상

사업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.

- (1) 모든 독성물질의 누출 사고를 대표하는 사고 시나리오 1개 이상
- (2)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(가연성 물질 포함)의 화재·폭발 대표 사고 시나리오 1개 이상

### 5.2 최악의 누출량 산정

- (1) 최악의 누출량은 다음 수치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.
- (가) 사고 시 비상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용기에 저장되는 최대량
- (나) 사고 시 비상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배관계에 보유하고 있는 최대량
- (2) (1)항의 최대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다.
- (가) 제조·사용시설은 자동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개별 제조·사용시설의 최대수량으로 한다. 해당 개별시설의 최대수량은 개별시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, 배관 등으로 서로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시설의 최대수량을 말한다. 또한,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수(Drain)용 배관만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배관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(나)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서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직접 연결된 모든 저장 탱크에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합산한다. 다만, 펌프 등 이송설비 후단에 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저장시설 사이에 자동으로 차단이 가능한 긴급차단밸 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시설별로 체류하는 양을 산정한다.
- (다) 사업장 경계부지 밖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배관과 같이 대용량의 배관의 경우 배관 내 최대 체류량을 최대량으로 한다. 다만, 자동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경우 구획 단위별로 최대량을 산정할 수 있다.

#### 5.3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

#### 5.3.1 독성물질 - 가스

(1) 대기온도에서 가스인 물질을 가스 상태로 저장 · 취급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액체

상태로 저장・취급하는 경우

(가) 건물 외부에 설치된 설비에서 누출된 경우에는 5.2항에서 산정한 누출량이 10 분 동안에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$$R_R = \frac{Q_R}{10}$$

여기서

-  $R_R$ : 누출속도 (kg/min)

- Q<sub>R</sub> : 누출량 (kg)

- (나)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에서 누출된 경우에는 5.2항에서 산정한 누출량에 <붙임 4>의 밀폐정도에 따른 완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수동적 완화장치로 한정한다.
- (2) 냉동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경우
  - (가)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어 액체의 층이 1 cm 이하일 때에는 가스의 경우와 같이 5.2항에서 산정한 누출량이 10분 동안에 모두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.
  - (나)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어 누출 된 액체의 층이 1cm 이상 형성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액체가 누출되어 액체 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액체층의 표면 으로부터 그 물질의 비점에서 증발되는 속도로 가정한다.
  - (다) 증발속도는 <붙임 3>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
# 5.3.2 독성물질 - 액체

- (1) 대기 온도에서 액체인 독성물질을 저장·취급하는 경우에는 5.2항에서 산정된 누출량이 순간적으로 누출되어 액체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.
- (2) 액체층의 표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  - (가) 방유제 등과 같은 확산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액체의 층이 1 cm 깊이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액체층의 표면적을 계산한다.

- (나) 방유제 등과 같은 확산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면적을 액체층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.
- (다) 누출된 주위 표면이 포장되지 않았거나 평편하지 않은 때에는 실제 주위의 표면 상태를 감안한다.
- (3) 대기중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액체층의 표면에서 증발되는 속도로 가정한다.
- (4) 증발속도는 <붙임 3>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- (5)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에서 누출된 경우에 증발속도는 전항에서 계산한 수치에 <붙임 4>의 밀폐정도에 따른 완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수동적 완화장치로 한정한다.

#### 5.3.3 인화성 가스. 인화성 액체 및 냉동액체

- (1) 누출량이 기화되어 증기운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한다. 이때, 폭발효율은 TNO 멀티에너지 모델, TNT 당량 모델 등에서 제시하는 효율로 산정하되, 문헌 등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0%로 가정한다.
- (2) 누출량 및 증발량 산정은 5.3.1항과 5.3.2항을 적용한다.
- (3) 누출량 중 증기운 폭발로 연계되는 양은 가스인 경우는 누출 전량, 액체인 경우는 최초 10분간 증발된 양으로 한다.

#### 5.3.4 물반응성 물질

- (1)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물반응성 물질 및 수분과 반응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화학 물질(이하 "반응생성물"이라 한다)은 <붙임 5>의 목록을 따르며 여기서의 반응 생성물은 가스에 한정한다.
- (2) 물반응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하는 취급시설에서 물반응성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영향범위와 반응생성물이 확산되는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피해거리가 큰 값을 영향범위로 선정한다.
- (3) 물반응성 물질의 누출량 및 증발량 산정은 5.2, 5.3.1 및 5.3.2항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.
- (4) 반응생성물의 누출량 및 증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  - (가) 물반응성 물질이 가스 상태로 누출되는 경우 반응생성물의 누출량은 누출되는 물반응성 물질이 모두 반응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.

- (나) 물반응성 물질이 액체상태로 누출되는 경우 형성되는 액체층 표면으로부터 증발된 물반응성 물질이 모두 반응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한다.
- 5.4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의 선정 시의 고려해야 할 인자

5.2항에 따라 선정된 사고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끝점의 도달거리가 더 클 경우 큰 결과의 시나리오를 선정한다.

- (1) 고온 또는 고압의 운전조건하에서 실제 취급량
- (2) 누출원의 주위로부터 인접 정도

# 6.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

6.1 사고 시나리오 분석대상

사업장은 취급하는 독성물질,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 및 필요 시 유해·위험물질에 대하여 각각 하나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하여야 한다.

- 6.2 사고 시나리오 선정 시 고려사항
  - (1) 사고 시나리오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  - (가) 최악의 가상사고 시나리오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
  - (나) 끝점이 사업장 외부에 도달하는 것
  - (2) 사고 시나리오는 주로 다음의 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한다.
  - (가) 이송호스 사고
  - (나) 공정배관 사고
  - (다) 압력용기 및 펌프 사고
  - (라) 압력용기의 과충전 및 과압
  - (마) 이송용기의 파손 또는 누출
  - (3) 다음의 사항들을 시나리오 선정 시에 반영한다.

- (가) 과거 5년간의 사고이력
  - ① 사고의 범위는 사망, 부상, 재산피해, 대피사례 및 환경 피해를 포함한다.
- ② 사고이력은 발생일시, 누출시간, 누출량, 누출원, 누출형태, 사업장 외부영향, 비상대응기관의 조치 결과 및 사고조사 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다.
- (나) 위험성평가 시에 발견된 위험요인
  - ① 공정 및 물질과 연관된 위험성을 포함한다.
  - ②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 및 인적오류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검토한 결과를 포함한다.
  - ③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.

### 6.3 설비별 누출공 크기 선정

- (1) 누출공 크기는 설비에 연결된 화학물질의 주 인입 또는 배출 배관의 크기에 따라 KOSHA GUIDE P-92-2012 "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", KOSHA GUIDE P-110-2012 "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수립에 관한 기술지침" 또는 API RP 581 "Risk-Based Inspection Technology"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되, 연결배관의 크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  - (가) 설비에 부착된 계기 도입관 또는 안전밸브 인입배관 등과 같이 정상운전 시에 화학물질이 이송되지 않는 배관은 고려하지 않는다.
  - (나) 유수분리설비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폐수 배관 등과 같은 주 공정유체 이외의 배관은 고려하지 않는다.
  - (다) 설비 내부에 액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하부 이송배관 중 가장 큰 배관을 기준으로 선정한다.
  - (라) 전체가 가스 또는 증기로 채워진 설비는 상부 및 하부배관에서 가장 큰 배관을 기준으로 선정한다.
  - (마) 탑조류 (Tower)와 같은 설비는 상부는 증기 기준으로, 하부는 액체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.
- (2) 누출공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- (가)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배관직경을 누출공의 크기로 산정한다.

- ① 가장 큰 연결구의 배관직경이 50 mm 미만인 경우
- ② 특수화학설비(운전온도가 350℃ 이상이거나 운전압력이 10 kg/cm² 이상)
- ③ 기타 탱크로리 체결부위 등 파손확률이 높은 경우
- (나) (가)호 이외의 경우에는 <표 1>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
## 6.4 누출시간

- (1) 누출시간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누출시간을 적용하되, 산정근거를 제시한다.
- (2) 누출시간 산정근거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API 581에 따른 누출시간 산출방법인 <붙임 6>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<표 1> 대안의 누출사고 시나리오의 누출공 선정기준 예

배관 지름	대안의 누출사고의 누출공 선정 기준			
인치	인치	적용근거	참고 기준	
2	2			
3	2			
4	2			
5	2			
6	2	6.3 (2) (가)호		
8	2			
10	2	ם	D 110 (사천)	
12	2.4	및	P-110 (A형)	
16	3.2			
18	3.6	배관 지름의 20%		
20	4			
22	4.4			
24	4.8			
50	10			

### 7. 끝점거리 계산

끝점거리는 KOSHA GUIDE P-102-2013 "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" 및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다.

# <붙임 1> 독성물질의 끝점농도

- 1. 끝점농도 기준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을 따른다.
- ① 미국산업위생학회(AIHA)에서 발표한 ERPG2(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2)
- ② 미국 환경보호청(EPA)에서 발표한 AEGL2(1시간)(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2)
- ③ 미국 에너지부(DOE)에서 발표한 PAC2(Protective action criteria 2)
- ④ 미국직업안전보건청(NIOSH)에서 발표한 IDLH(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) 수 치의 10%
- ⑤ IDLH 수치가 없는 물질은 다음의 순서대로 IDLH 수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- ① 0.1 × LC<sub>50</sub> 또는 0.2 × LC<sub>50</sub>
  - \*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.1,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.2 적용
  - $\bigcirc$  1 × LC<sub>Lo</sub>
  - © 0.01 × LD<sub>50</sub>(경구)
  - ② 0.1 × LC<sub>Lo</sub>(경구)
- 2. 끝점농도의 ppm은 25℃에서의 수치이며 끝점거리 계산 시에는 대기의 온도조건에 따라 ppm의 수치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한다.

# <붙임 2> 대기안정도

바람속도, S	낮 복사강도의 크기			밤	
(m/s)	강	중	약	흐림	맑음
S ≤ 2	A	A-B	В	F-G	G
2 <s≤3< td=""><td>A-B</td><td>В</td><td>С</td><td>Е</td><td>F</td></s≤3<>	A-B	В	С	Е	F
3 <s≤5< td=""><td>В</td><td>В-С</td><td>С</td><td>D</td><td>Е</td></s≤5<>	В	В-С	С	D	Е
5 <s≤6< td=""><td>С</td><td>C-D</td><td>D</td><td>D</td><td>D</td></s≤6<>	С	C-D	D	D	D
6 <s< td=""><td>С</td><td>D</td><td>D</td><td>D</td><td>D</td></s<>	С	D	D	D	D

주) 1. "바람속도"는 지상 10 m에서 측정한 수치임.

2. "밤"이라 함은 해지기 1시간 전부터 해뜬 후 1시간 사이를 말함.

3. "강"이라 함은 맑은 날씨에서 태양의 고도가 60°이상을 말함.

4. "중"이라 함은 맑은 날씨에서 태양의 고도가 60°미만 35°이상을 말함.

5. "약"이라 함은 맑은 날씨에서 태양의 고도가 35°미만을 말함.

6. 안정도 구분

A: 매우 불안정함

B : 불안정함

C: 약간 불안정함

D : 중간

E: 약간 안정함

F : 안정함

G: 매우 안정함

# <붙임 3> 증발속도 계산방법

$$R_{E} = \frac{1.4 \times U^{0.78} \times M_{W}^{2/3} \times A \times P_{V}}{82.05 \times T}$$

여기서

-  $R_E$  : 증발속도(kg/min) - U : 풍속(m/sec)

- *M*<sub>m</sub> : 분자량 - *A* : 액체층의 표면적(m²) <sup>(주1)</sup>

-  $P_v$  : 증기압(mmHg) - T : 온도(K)  $^{(주2)}$ 

주1) 액체층의 표면적 계산

(1) 확산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
$$A = 0.1 \times \frac{Q}{\rho}$$

여기서

- A : 액체층의 표면적( $\mathbf{m}^{2}$ ) - Q : 누출량( $\mathbf{k}\mathbf{g}$ )

- ρ : 밀도(g/cm³)

- (2) 확산방지 조치(방유제 등)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수치 중 작은 수치로 선정한다.
  - (가) 방유제의 내부면적(m²)
  - (나) 전항에서 계산한 수치(m²)

주2) 온도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.

- 냉동액체 또는 가열된 액체인 경우에는 그 물질의 비점
- 상온에서 취급하는 액체는 25℃

# <붙임 4> 밀폐정도에 따른 완화지수

밀폐정도		미 렌 フ 기		완화지수	
건물구조	정도	밀폐조건		액체	
일반형 (Indoor)	보통	실내 건물로서 출입구 및 창문들이 상시 닫혀 있는 공간	0.55	0.10	
밀폐형 (Enclosure)	높음	실내 건물이나 누출 시 창문 및 외부공기 유입 댐퍼 등이 자동으로 닫히고 누출된 물질이 대기 오염처리시설 등으로 자동으로 배기되는 시설을 갖춘 건물	0.30	0.01	
봉쇄형 (Containment)	매우 높음	폭발 봉쇄(Containment) 설비와 같이 폭발 방산구 외 창 또는 개구부 등 없이 완전히 밀폐된 시설 (사람이 상주 또는 출입 가능한 장소는 적용제외)		0.001	

# 비고

1. 밀폐형이라 하더라도 감지기, 송풍기 등이 예비설비를 갖추었고 비상전원과 연결되어 상시 작동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봉쇄형 완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(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으나 점검 등을 위해 사람출입 가능).

# <붙임 5> 물반응성 물질 목록

번호	화학물질(영문명 및 CAS 번호)	발생가능 유해화학 물질
1	트리클로로 붕소[Boron trichloride ; 10294-34-5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	HCl
2	염화 티오닐[Thionyl chloride ; 7719-09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	HCl
3	디클로로실란[Dichlorosilane ; 4109-96-0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	HC1

# <붙임 6> **누출시간**

<표 1> 검출 및 차단시스템의 등급결정 기준

검출시스템 유형		차단시스템 유형	차단 등급
시스템 운전조건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손실(즉, 압력 혹은 흐름 손실)을 검 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시스템	A	어떠한 운전자의 개입 없이 공정기기나 검출기로부터 직접 차단되는 시스템	A
압력설비 밖에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히 설치된 검출기	В	누출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어실 또는 기타 적절한 위치 에 있는 운전자에 의해서 제어 되는 차단 시스템	В
육안검출, 카메라 혹은 검출기	С	수동 운전 밸브에 의한 차단	С

# <표 2> 검출 및 차단 시스템에 기반한 누출시간

검출 시스템 등급	차단 시스템 등급	누출시간
A	A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1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5분
A	В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30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10분
A	С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40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3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
В	A 또는 B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40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3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
В	С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1시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3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
С	A, B, 혹은 C	1/ <sub>4</sub> 인치 누출의 경우엔 1시간 1 인치 누출의 경우엔 40분 4 인치 누출의 경우엔 20분